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5

2024년 4월 23일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김경훈 의원 외 33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 자원'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함.

나. 주요골자

1)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 2항제8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경관 자원의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 자원'을 반영한 도시숲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1)으로 제5조에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행할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 자원 조성·보존·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바 있음.

또한, "경관 자원"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경관숲의 정의²⁾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음.

 따라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에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보전·활용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판단 됨.

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4. 3] [법률 제19879호, 2024. 1. 2, 일부개정]

²⁾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지원(「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 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 · 보전 · 활용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2
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도시숲등의 경관 자원 조성ㆍ
	보전·활용에 관한 사항
<u>8</u> . ~ <u>10</u> . (생 략)	<u>9</u> . ~ <u>11</u> .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